

#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726
----------	-----

2015. 12. 17  
도시계획관리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## 1. 제안경위

- 2015. 9. 4일 남창진 의원 발의(2015. 9. 7일 회부)

## 2. 제안이유

- 「도시개발법」 개정으로(2013.3.22.)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가 도시·군 계획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정비 및 개량까지 확대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」에서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도시계획시설사업비에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사업 외에도 도시계획시설의 정비·개량 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을 포함함(안 제11조제1항제2호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별첨)

## 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남창진 의원이 2015년 9월 4일 발의하여 9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.
- 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 개정('13.9.23. 시행)에 따라 (붙임1)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 뿐만 아니라 정비·개량사업까지 확대된 사항을 반영한 것임.
- 이는 개발중심의 시대에서 관리중심의 시대로 전환되면서,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범위에 도시계획시설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을 정비·개량하는 것까지 확대함으로써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정비한 것으로 이해됨.
- 따라서,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취지대로 개정내용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법령 개정시점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이 다소 늦었다고 할 수 있고, 조례 개정을 하지 않은 채 집행부가 법령 개정만을 토대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운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, 법령 개정에 따라 조속히 조례 개정을 추진한 후 집행하는 태도가 요구된다고 하겠음.
- 또한,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은 도시재생본부가, 세출은 기획조정실이 소관하고 있어 기획조정실과 도시재생본부 간에 보다 긴밀한 업무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특별회계의 용도) ①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비(설계비, 보상비, 공사비, 이전비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)</p> <p>2.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비 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설계비, 보상비, 공사비, 이전비 등 모든 비용과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매수청구대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</p> <p>3~11. (생략)</p>	<p>제11조(특별회계의 용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도시계획시설의 설치·정비·개량 사업에 드는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3~11. (현행과 같음)</p>

<붙임 1>

도시개발법 신구조문대비표

개 정 전	개 정 후 (‘13.3.22. 일부개정, ’13.9.23. 시행)
<p>제61조(특별회계의 운용)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</p> <p>1.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</p> <p>2.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</p> <p>3.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·<u>군계획시설</u>의 <u>설치사업비</u></p> <p>4~8. (생략)</p>	<p>제61조(특별회계의 운용) ① (개정전과 같음)</p> <p>1~2. (개정전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<u>군계획시설</u> <u>사업에 드는 비용</u></p> <p>4~8. (개정전과 같음)</p>

도시개발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

개 정 전	개 정 후 (‘13.9.17. 일부개정, ’13.9.23. 시행)
<p>제79조(도시개발특별회계의 지원대상)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·군계획시설”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을 말한다.</p>	<p>제79조(도시개발특별회계의 지원대상)</p> 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설치·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.</u></p>